

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

제1조 (약관의 적용)

이 약관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참가기관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에 적용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① “오픈뱅킹공동업무”란 이용기관과 참가기관이 개별은행과 별도 제휴 없이도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(조회, 이체 등)를 표준화된 API형태로 운영·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
② “이용기관”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승인을 받아 금융결제원(이하 “결제원”)과 오픈뱅킹 이용계약을 체결한 핀테크 사업자와 은행을 말합니다.

③ “참가기관”이란 오픈뱅킹공동업무에 참가하는 결제원의 사원,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을 말합니다.

④ “금융정보조회”란 사용자가 이용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제5조에 명시하는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조회 요청을 한 경우 은행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.

⑤ “오픈뱅킹중계센터”란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구축하고 운영하며, 은행과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결제원이 담당합니다.

제3조 (금융정보조회 신청)

① 사용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한 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전달됩니다.

② 사용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서면(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), ARS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정보조회 동의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③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사용자의 금융정보조회 신청시 사용자가 신청한 실계좌번호를 가상의 계좌번호(이하 “핀테크이용번호”라 한다)로 이용기관에 제공합니다. 단, 자체인증 이용기관(은행 및 대형사업자 등)인 경우에는 실계좌번호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④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.

제4조 (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)

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1. 매일 23:40 ~ 00:30은 시스템 전환시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(단, 휴일 다음 익영업일 거래 시에는 휴일거래량, 은행 시스템 환경 등에 따라 시스템 전환시간이 23:20 ~ 03:00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, 기타 시스템 상황에 따라 전환시간 및 중단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).

제5조 (금융정보 종류)

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 다만, 3호의 경우 BC카드를 통해 제공됩니다.

1. 잔액조회 :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잔액 조회
2. 거래내역조회 : 사용자 본인명의 계좌에 대한 실시간 거래내역(거래일시, 거래점명, 거래금액, 거래 후 잔액, 통장인자내용) 조회
3. 카드정보조회, 카드청구정보 조회 등 카드 관련 정보

제6조 (금융정보제공 및 금융정보 제공사실 통보)

① 사용자가 이용기관을 통해 은행으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은 별도의 통지 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,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실계좌번호를 핀테크이용번호로 변경하여 이용기관으로 통지합니다. 단, 자체인증 이용기관(은행 및 대형사업자 등)인 경우에는 핀테크이용번호 변경 없이 실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은행은 사용자가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한 연락처로 사용자에게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.

③ 사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 등록한 연락처를 변경하여야 하며,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④ 은행은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1년 이내 단위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금융정보조회 중단)

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1.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기타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8조 (금융정보조회 해지)

① 사용자는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오픈뱅킹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이용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
② 은행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
1.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
2. 1년 이상 이용기관의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

제9조 (면책 사항)

이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합니다.

제10조 (관할 법원)

이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은행과 사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11조 (약관의 변경)

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“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 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
제12조 (다른 약관과의 관계)

① 금융정보조회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,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.

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,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약관은 2021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